의안번호	2200804
의 뢰 인	김선교 의원
회 답 일	2024.07.17.
추계번호	24C1237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 (휴직)	(제1항)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7.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 (휴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‘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’에서 ‘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’로 대상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임

○ 현행법 제45조제7호[1]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이고,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%에 해당하

1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(휴직 기간) ①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.
6.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.

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액이 70만원, 상한액이 150만원이며,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[2)]

○ 다만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「한부모지원법」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금액을 상향 규정하고 있음[3)]

❑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될 경우 육아휴직자가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증가할 육아휴직 공무원 수와 이들의 월 봉급액, 대체인력 필요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워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○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의 구체적 규모 및 육아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, 수당지급기간(1년) 해당 여부,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[4)]이나 기간제 채용[5)]을 통한 대체인력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움

---

2)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제11조의3(육아휴직수당)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.
②~⑤ (생 략)
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3)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(육아휴직수당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
1.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
가.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.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, 2개월째는 250만원, 3개월째는 300만원, 4개월째는 350만원, 5개월째는 400만원,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.
나.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: 제1항에 따른 금액

4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(휴직·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)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·제3호·제5호·제6호,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·직위 또는 상당 계급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)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5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2조(기간제교원)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1.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

- 참고로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교원 수는 2021년 18,068명, 2022년 18,358명, 2023년 16,835명임[6)]

○ 이에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6) 자료: 교육부